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방향

전 준 현

특허청 조사과 행정사무관

I. 서 론

최근 반도체기술의 해외유출사건이 발생하고, 기업의 인수 합병 등 구조조정으로 영업비밀을 취급하는 자의 이동증가, 외국인 산업연수생 등 국제교류 증대로 인한 영업비밀 침해행위 증가우려가 있어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기 위하여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의 영업비밀보호규정은 '91년말에 부정경쟁방지법에 영업비밀보호의 장을 신설하여 '92.12.15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는데 그 주된 내용은 영업비밀의 정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6가지 유형, 그리고 그 보호방법으로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금지·예방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신용회복 청구권 등 민사적 구제수단과 "기업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특유한 생산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영업비밀 보호제도는 19세기초부터 영·미를 중심으로 구미제국에서 영업비밀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재산으로 인식하여 그 보호가치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어 발달되어 온 제도이다. 영국에서는 퇴직 후의 종업원에 의한 영업비밀의 부정사용, 부정 공개행위를 금지 또는 예방하려는 움직임이 기술분야에서부터 일기 시작하여 점차 판매, 기타 경영분야에까지 확산되어 보통법(common law)에 의하여 보호되어 왔으며, 상당히 상세한 법리가 계약위반과 불법행위 및 신뢰위반 등의 법

원칙에 기초한 판례법에 의하여 축적되어 왔다. 미국에서도 19세기초부터 판례법에 의해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발달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각 주마다의 보통법에 의해 그 법리가 확립되었으며, 1979년 민사적 구제를 중심으로 한 모델법인 통일영업비밀법(Uniform Trade Secret Act)을 제정·공포하여 현재 40개 주에서 州法으로 채택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96년 말에는 미국의 첨단기술, 산업정보에 대한 국내·외의 산업스파이 행위에 강력히 대처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형사처벌을 규정한 경제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한편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에서도 1896년에 제정한 부정경쟁방지법에 영업비밀보호규정을 두었고, 1909년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영업비밀의 부정사용에 대한 형벌규정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였으며, 스위스, 오스트리아, 일본이 부정경쟁방지법과 형법에 의해서 보호하고 있고,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국가도 민법, 형법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홍콩, 말레이시아 등 개발도상국까지도 보통법과 형법에 의해서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각국의 입법례를 비교하여 볼 때, 영업비밀의 정의, 민사적인 구제방법 등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으나,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해당 법률에 형사처벌규정은 두지 않고 민사적인 구제방법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과 독일의 경우는 해당 법률에 전반적인 처벌규정을 두고, 우리나라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영업비밀이 1980년대 후반기에 들어오면서 그 중요성이 급격히 증대

하고 있는 것은 냉전이후의 경제판도가 기술력과 판매전략, 즉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에 의해 결정되면서부터이다. 우리나라도 '91년 말에 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을 촉진시켜 산업발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며, WTO/TRIPs의 이행을 통한 선진국과의 통상마찰을 해소하기 위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보아 부정경쟁방지법에 영업비밀보호의 장을 신설하고, '92.12.15부터 시행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1. 영업비밀을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하였으며,

2.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6가지 유형을 나열하고,

3. 그 보호방법으로서 민사적 구제수단과 형사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가. 민사적인 구제수단으로서

①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위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②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손해배상청구권).

③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신용회복청구권).

나. 형사적인 처벌로서는

“기업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특유한 생산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한 자”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내용을 주요 국의 입법례와 비교하여 볼 때, 영업비밀의 정의, 민사적인 구제방법 등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으나,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각국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미국과 독일의 경우 해당 법률에 처벌규정을 두고,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해당 법률에 민사적인 구제방법만을 규정하고 형사처벌규정은 두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①현직 임직원으로서 ②기업 특유의 생산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로 국한시켜 형사 처벌토록 하고 있다. 최근 반도체기술의 해외유출사건이 발생하고, 기업의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으로 영업비밀을 취급하는 자의 이동증가, 외국인 산업연수생 등 국제교류 증대로 인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증가우려가 있어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한정적으로 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마련한 개정안의 주요 골자와 개정이유는

가. 이 법이 규율하고 있는 사항중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한 내용의 비중이 커진데다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임을 일반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不正競争防止法」을 「不正競争防止 및 營業秘密保護에 관한法律」로 법률의 명칭을 개정하고

나.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없어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자가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영업비밀의 성격상 이를 계수화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營業秘密 침해행위로 인한 損害賠償을 請求하는 경우에 대해 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額을 請求人の 損害의 額으로 推定하도록 하는 등 營業秘密 침해행위로 인하여 營業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損害賠償 請求訴訟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損害額의 推定, 서류의 제출 규정을 신설하였다.

다. 營業秘密侵害에 대한 刑事處罰을 強化하기

위하여

• 종전에는 기업의 現職 임직원이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에만 처벌하던 것을 前職 임직원이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처벌토록 하였는데 이는 입법 정책적으로는 내부인의 누설행위뿐만 아니라 외부인에 의한 일반적인 탐지행위까지도 형사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신분범만 처벌토록 한 것은 영업비밀의 성격상 그 침해행위가 대부분 前·現職 임직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속 기업에 대한 배신행위라는 점에서 가벌성이 높기 때문이다.

— 그리고 現職과 前職을 구분하여 現職 임직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한 경우에 처벌하고, 前職 임직원은 직업선택 또는 직장이동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영업비밀 유지의무를 위반하여 누설한 경우로 한정시켰다.

* 참고로 미국과 독일은 누구든지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 등 기타 국가에서는 해당 법에 규정을 두지 않고 형법이나 보통법에 의하여 처벌하고 있다.

• 처벌대상 영업비밀도 기업에 特有한 生産技術에 관한 영업비밀 누설에서 기업에 有用한 技術상의 영업비밀 누설로 확대하였는데

— 제3자가 개발한 생산기술을 이전 또는 실시권을 받아 영업비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업의 특유한 생산기술에 포함되지 않고

— 또한, 일반적으로 영업비밀은 기술상의 영업비밀과 경영상의 영업비밀로 분류하는데 기술상의 영업비밀중 생산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을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렵고, 生産技術에 관한 영업비밀에는 실험 데이터, 연구개발 보고서 등과 같이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영업비밀이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 이에 따라 형사적 보호대상을 확대하되, 경영상의 영업비밀 보호에 비해 기술상의 영업비밀 보호를 보다 강화시키는 산업 정책적 측면을 고려하고, 그 구분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 기업에 유용한 技術상의 영업비밀”로 개정하게 된 것이다.

* 이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미국의 경제

스파이법에서는 기술 또는 경영상 모든 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독일의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사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경영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 한편, 일반적으로 영업비밀은 기술상의 정보와 경영상의 정보로 분류하고 있는데

— 기술상의 정보로서는 제조방법, 제조공정, 화학방법, 배합방법, 강도제산의 운용방법, 설계방법, 설계도면, 청사진, 실험자료, 연구개발 보고서 등을 말하며,

— 경영상의 정보로서는 고객의 명부, 거래선의 루트, 판매지침서, 시장조사정보, 사원연구지침서, 고객관리기법, 판매 매뉴얼, 제품의 할인 시스템, 자금조달계획, 설비투자계획, 예산배분계획, 직제 개정계획 및 조직관리기법, 영업전략정보, 사업계획자료, 사업성 검토자료, 선전광고기법 등을 일컫는다.

• 법정형량은 현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특허권 침해등 산업재산권 침해사범과 동일한 수준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였다.

* 미국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불 이하의 벌금, 독일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전형적인 산업스파이 행위인 外國관련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일반범에 비해 加重處罰토록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 外國관련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미국은 15년(일반범 10년), 독일은 5년(일반범 3년)으로 가중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과 별도로 이미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벌금형을 병과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에 실질적인 제재수단은 벌금형이 될 수 있으므로 형의 병과규정을 신설하였다.

• 한편, 종전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일반 사경제행위로 보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방위 산업과 관련된 영업비밀, 국가기간산업과 관련된 영업비밀등 국가안전보장 또는 중대한 공공의 이익과 직결된 영업비밀은 비록 기업체에 속한 것일 지라도 이것이 침해되었을 경우 국익보호 차원에서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산업스파이 행위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전적으로 맡길 수는 없으므로 친고죄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안전보장 또는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친고죄로 규정하였다.

그간의 논의과정에서 반도체 등 첨단기술 보유 업체를 비롯한 일부에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대폭 확대·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관련 학계에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민사적인 구제방법 위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형사처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민사적 구제수단이 형식화될 우려가 있고, 아직도 일부 업계에서는 기술 및 고급인력 유입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경제사범의 과도한 형사범화는 우리가 직면한 경제난 타개에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어 이러

한 상반된 입장을 조율하여 민사적인 구제방법과 형사적인 처벌의 조화를 도모하면서 비윤리적이고, 반국가적인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상과 같은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그간 전문연구기관(기술과법연구소:소장 김문환 국민대교수)의 연구와 관련업계 및 기관의 의견, 공청회 개최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규제개혁심의위원회 및 법제처의 심사과정을 마치고 정부안으로서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이 법률은 99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저자 소개



田 峻 憲

1949년 6월 22일생, 홍익대 전자공학과, 방송대 경제학과 졸업, 1977년 2월 총무처 정부전자계산소 인사국 근무, 1979년 10월~1997년 7월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 수출1과, 상파울로 무역관 자원협력과, 산업배치과 근무, 1997년 7월~현재 특허청 관리국 조사과 근무